

의안번호	2112165
의 퇴 인	박완주의원
회 답 일	2021. 08. 3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 추가재정소요 : 향후 5년 간 총 1,476억 1,500만원, 연평균 295억 2,300만원

차 례

I. 비용추계 결과	1
II. 재정수반요인	1
III. 비용추계의 전제	1
IV. 비용추계 상세 내역	2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2
2. 변수별 추계	2
가. 신규 지방연수원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 수	2
나. 평균 출연금	4
3. 추계 결과	5

일러두기

-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인 시에도 지방연구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295억 2,300만원 씩,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1,476억 1,5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백만원)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지방연구원 설립요건 완화 (안 제4조)	29,523	29,523	29,523	29,523	29,523	147,615	29,52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 지방연구원의 설립요건 완화(안 제4조)
 -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음
 - 현행법은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음

III. 비용추계의 전제

-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모든 시가 2023년부터 지방연구원을 설립·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지원 규모는 일정하다고 가정
 - 지방연구원을 운영 중인 인구 100만 이상의 시의 연도별 출연금 지원액이

일정한 추이가 없이 증감의 편차를 보이고 있음

- 개정안은 시행일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법안의 발의 및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

IV.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추가재정소요의 대상은 개정안에 따라 지방연구원을 설립하는 시의 지방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임

<비용추계 산식>

$$\text{추가재정소요}_t = \sum_t \text{신규 지방연구원 설립 지방자치단체 수}_t^{1)} \times \text{평균 출연금}_t^{2)}$$

이때, t는 추계연도(2023 ~ 2027년)

1) 지방자치단체 수 :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인 13개 시

2) 평균 출연금: 유사 사례인 용인시정연구원의 평균 출연금 적용

2. 변수별 추계

가. 신규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 수

- 현행법상 지방연구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 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와 인구 100만 이상의 시(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임¹⁾

1)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10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 이에 따라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4개 지방연구원을, 인구 100만 이상 시에서 4개 지방연구원을 설립·운영하고 있음

[표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연구원 운영 현황

구분	광역자치단체(14개)	기초자치단체(4개)
연구원명	서울연구원, 부산연구원, 인천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울산연구원, 강원연구원, 경기연구원, 충북연구원, 충남연구원, 전북연구원, 경남연구원, 제주연구원	고양시정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용인시정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

주) 세종특별자치시는 대전광역시에 위탁,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은 통합하여 운영중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

- 2021년 7월 기준, 개정안에 따라 신규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는 총 13개임
-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인 자치단체는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남양주시, 시흥시, 화성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김해시임

[표 3] 인구 수 50만 이상 100만 미만인 시 현황

(2021. 7. 기준, 단위:명)

기초자치단체	인구 수	기초자치단체	인구 수
성남시	931,756	화성시	872,537
안양시	548,960	청주시	847,642
부천시	810,069	천안시	657,584
평택시	551,603	전주시	657,664
안산시	654,678	포항시	503,489
남양주시	725,031	김해시	539,477
시흥시	511,747	—	—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나. 평균 출연금

□ 유사 사례인 지방연구원 중 용인시정연구원의 평균 출연금 적용할 경우 연간 출연금은 22억 7,100만원임

- 인구 100만 이상 시가 설립·운영 중인 지방연구원은 그 시의 규모나 설립 시기 등에 따라 각 지방연구원의 조직 규모²⁾ 등이 달라 출연금 지원 규모가 다르므로, 가장 최근에 설립된 용인시정연구원을 참고로 함

[표 4] 시정연구원의 출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연도	고양시정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용인시정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
2014	-	2,916,000	-	-
2015	-	3,920,000	-	1,000,000
2016	-	4,215,000	-	1,694,000
2017	2,796,000	5,250,000	-	2,315,482
2018	2,000,000	5,007,000	-	2,964,692
2019	2,136,107	4,973,678	1,829,000	2,915,106
2020	2,765,395	4,328,279	2,716,743	2,778,851
2021	2,900,355	5,298,444	2,265,784	3,215,106
평균액	2,519,571	4,488,550	2,270,509	2,411,891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

2) 인구 100만 이상 시의 지방연구원 임·직원 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명)

구 분	임·직원 수		
	합 계	임원 수	직원 수
고양시정연구원	42	12	30
수원시정연구원	94	17	77
용인시정연구원	41	17	24
창원시정연구원	35	11	24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

3.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가 지방연구원을 설립·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295억 2,300만원이 발생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1,476억 1,5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지방자치단체 수(①)	13	13	13	13	13	—
평균 출연금(②)	2,271	2,271	2,271	2,271	2,271	—
합 계(①×②)	29,523	29,523	29,523	29,523	29,523	147,6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비용추계과
과	장 임준기
추계세제분석관	안종덕
연 락 처	02-6788-4831
	whomi@nabo.go.kr
